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가단5481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16. 3. 2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2. 11. 15. B에게 150만 원을 대출만기일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4. 12. 12.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아,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37365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20.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E은 2013. 1. 14. B에게 8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8.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A는 2014. 11. 20.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아,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62519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9.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B의 모 F가 2016. 3. 29. 사망함에 따라 B이 위 F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으나, 2016. 6. 30. 형인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따라 A는 2020. 8. 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20가단62912호(이송전 사건)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B은 수원지방법원 2020개회3497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20. 11. 24.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자인 A도 개인회생채권자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이 2021. 7. 21.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이 법원의 2021. 8. 13.자 속행명령에 의하여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A가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의 이 사건 소송을 그 소제기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B이 이를 수계하고도 변론종결일까지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성시 G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성시 H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1층 내지 2층 각 199.72㎡, 3층 167.06㎡, 옥탑 20.1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G 대 40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1호 철근콘크리트조 59.6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06분의 47.87 ㎡

